스포츠클럽 진흥법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60 발의연월일: 2020. 9. 9.

발 의 자:배현진·홍준표·김형동

허은아 · 황보승희 · 지성호

유두현 • 최승재 • 홍석준

권성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을 이끌어온 '학교운동부' 중심의 스포츠 시스템은 학령인구의 감소,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 구축 등 대내외적으로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함.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학교운동부'에 대한 대안으로서 '스포츠클럽'이 학계 또는 시민사회 등에서 제안되었고, 대한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등을 통해구체화 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국민 누구나가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할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조성하고, 스포츠클럽을 통해 전문선수가 발굴되고,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에서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

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등을 규정하여 생활체육 중심의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실현하고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등).

스포츠클럽 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제1 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 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2.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 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 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 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수립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안정적 인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 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 제5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스포츠클럽의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3.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
 - 4. 스포츠클럽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 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스포츠클럽의 등록) ①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0명 이상의 스포츠클럽회원과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 2. 대표자 및 스포츠클럽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 3.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그 대표자가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을 겸하지 아니할 것을 포함한다)
-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가입,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에 납부할 회비의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스포츠클럽 등록의 취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 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 클럽 등록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공익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 정스포츠클럽을 정할 수 있다.
 -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 2. 스포츠 향유 취약계층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 3.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 4.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종목 및 비인기종목의 육성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호에 따른 공익목적을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감염예방 및 안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감염병 등의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 있도록 시설 및 기구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방역조치 등에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생활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지부·지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선수육성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체육발전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4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①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학교 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에 개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보험 등의 가입) 스포츠클럽 운영자는 스포츠클럽의 운영과 관련하여 스포츠클럽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기본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 클럽의 활동현황 및 실태(회원의 인권·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등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스포츠클럽 또는 관련 기관·단 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스포츠클럽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스포츠클럽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 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18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 아닌 자는 지정스포츠클럽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0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그 밖에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 경기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2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 수·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운영자가 제15조에 따른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스포츠 향유 취약계층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기초종목 및 비인기종목의 육성 등 공익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5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자
 - 2. 제18조를 위반한 자
 - 3.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